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81
------------	------

발의연월일 : 2016. 12. 7.

발의자 : 신보라 · 송희경 · 김명연

박덕흠 · 김선동 · 이종배

이우현 · 윤종필 · 경대수

박인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8개 관측기관에 대하여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최근 기상관측시설 등급에 관한 국제표준(ISO 19289)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기준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고려할 점에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 관측환경 등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p> <p>① · ② (생 략)</p> <p>③ <u>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 · 규모 · 수준, 기상관측환경, 국내외의 자료 교환, 관측기준시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u></p> <p>④ ~ ⑥ (생 략)</p>	<p>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 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